

보도자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9.12.9.(월)	
			<u>'</u>	

						· — ·	
책 임 자	1	융위 기업회계팀 <u>1</u> 문 (02-2100-2		담 당 자		허남혁 주무관 ((02-2100-2695)
	1	감원 회계심사국 † 일 (02-3145-7			김철호 팀장 (()2-3145-7720)	
	1	감원 회계조사국 ∤ 성 (02-3145-7			윤정숙 팀장 (()2-3145-7313)	
		회계사회 감리2본 <u>1</u> 용 (02-3149-0	-		김학관 감리위원	(02-3149-0362)	

제 목: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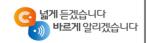
- □ 중권선물위원회는 12월 9일 임시 제3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젠플러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일부정지 건의** (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제3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2019.12.9.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엠젠플러스	【회사】	회 사 :
결산기 : 2011.12.31.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13년 988백만원, '14년 705백만원)	- 과징금 220.2백만원
2012.12.31. 2013.12.31.	- 회사는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	- 과태료 50백만원
2014.12.31.	주식을 '13년 및 '14년에 각각 130만주(담보 제공	- 감사인지정 2년
2015.12.31. 2016.12.31.	당시 시가 988백만원) 및 76.2만주(담보 제공 당시 시가 705백만원)를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 검찰통보(회사 및 前대표이사)
2017.12.31.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시정요구
	② 허위 매출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등('14년~'15년)	- 개선권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여금 허위계상 ´14년 연결·별도 345백만원, 매출원가 누락 연결 ´14년 340백만원, ´15년 190백만원,	※ 대표이사 해임권고
업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별도 '14년 739백만원, '15년 356백만원, 허위매출 계상 연결 '14년 355백만원, '15년 456백만원 등]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퇴직자
	-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45백만원을 횡령하여 본인의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동 금액을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 종속회사인 OOOOO과 관계회사인 OOOOO가 회사에 제공한 커머스사업 인적용역 대가(매출 원가)를 비용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종속회사 OOOOO은 관계회사 OOOOO에게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③ 장기체화재고 관련 매출 허위계상 등 ('14년~'15년 271백만원)	
	- 회사는 제조된 후 2년간 판매되지 않고 방치되던 장기체화재고 중 일부를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매출로 계상하고 1년 후 대손상각 하는 방법으로 매출('14년) 및 대손상각비('15년)를 271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④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4년 1,228백만원, '15년 1,188백만원, '16년 1,076백만원)	
	 완제품 발주업체가 구매하여 공급한 원재료 가액을 생산을 위해 조립업체에 원재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출로 계상하고, 동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이전받지 않았음에도 동 원재료 가액을 완제품 발주업체에 대한 매출액에도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⑤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 미기재('15년 7,740백만원)	
	- ´15.12월말 OOOO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8,600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금을 제외한 취득가액 7,740백만원에 대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⑥ 종속회사 등과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7년 연결 매출 735백만원, 매출원가 710백만원, 별도 매출 2,715백만원, 매출원가 2,510백만원)	
	- 최대주주가 개발하였으나 하자 등으로 수리가 반복되었고 신모델 출시로 국내 경쟁력을 상실한 건강관리장비(EMS)가 중국 소재 종속회사(지분율 100%)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종속회사에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매입 및 매출로 계상하였고,	
	- 실질적으로는 무선통신용품 제조업체(제3자)의 제품 매입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에서도 관련 제품을 직접 매입한 후 동사에 매출로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 연결재무제표에 매출 735백만원 및 매출원가 710 백만원 과대계상, 별도재무제표에 매출 2,715백만원 및 매출원가 2,510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⑦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11년~'16년 46,446백만원~75,096백만원)	
	- 회사는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출한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관련 사실과 해당 거래처벌 매출액 등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누락 하였음	
	⑧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 회사는 '15.7.24.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서류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14년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⑨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14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매출원가 누락 및 매출 허위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짓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 7071501 =1311417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아난티	【회사】	회 사 :
(주)아난티 결산기 :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6. 3.31. 2016. 6.30. 2016. 9.3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골프장 운영업	【회사】 ① 선급금(전도금) 과대 계상 ('10년: 1,241백만원, '11년: 1,953백만원, '12년: 2,002 백만원, '13년: 2,077백만원, '14년: 2,254백만원, '15년 : 1,859백만원, '16.1분기: 2,028백만원, '16반기: 2,076 백만원, '16.3분기: 2,082백만원) -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급·사용하고 증빙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증빙없는 지출을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세무상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장기간 선급금 내 전도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선급금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 주석 등 기재누락 ('11년: 3,084백만원, '12년: 3,222백만원, '13년: 3,368백만원, '14년: 10,643백만원, '15년: 12,418 백만원, '16.1분기: 4,126백만원, '16반기: 3,655 백만원, '16.3분기: 3,756백만원)	- 과징금 358.8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과 특수관계자 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과다 하게 기재하는 등 주석을 부실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있음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아난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광교회계법인 :
	① 선급금(전도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10년:1,241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 감사인은 전도금이 재무제표에 장기간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전도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 및 예금 관련 내부통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	공인회계사 1인 :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아난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대주회계법인 :
	① 선급금(전도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11년: 1,953백만원, '12년: 2,002백만원, '13년: 2,077백만원, '14년: 2,254백만원, '15년: 1,859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 감사인은 전도금이 재무제표에 장기간 자산으로	-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전도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 및 예금 관련 내부통제 검토	공인회계사 1인 :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②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1년 : 3,084백만원, '12년 : 3,222백만원, '13년 : 3,368 백만원, '14년 : 10,643백만원, '15년 : 12,418백만원)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일부 누락	- 직무연수 8시간
	및 과대계상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한 검토를 일부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공인회계사 1인 :
	기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공인회계사 2인 :
		-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フ フ エ - フ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일호주택㈜	【회사】	회 사 :
결산기 : 2016.12.31. 2017.12.31.	①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소계상 ('16년 488백만원, '17년 39,402백만원)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비상장법인 업종:주택건설 및 주택분양업	- 회사는 신축·분양 중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계약의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하여야 하나,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함으로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과소계상함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② 재고자산(미완성공사) 과대계상 ('16년 3,421백만원, '17년 7,573백만원) - 회사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을 재고자산(미완성공사)의 원개('16년 3,421백만원, '17년 5,251백만원)에 포함하고, '17년에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비용에서 자본화('17년 2,322백만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재고자산과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17년 68,471백만원) - 회사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한도 68,471백만원, 실행금액 40,029백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일호주택㈜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한라공인회계시감사반(제229호):
결산기 : 2016.12.31. 2017.12.31	①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년 488백만원, '17년 39,402백만원)	- 일호주택(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비상장법인 업종: 주택건설 및 주택분양업	- 회사가 신축·분양 중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계약의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하여야 하나,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함으로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② 재고자산(미완성공사)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년 3,421백만원, '17년 7,573백만원) - 회사가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분양대행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을 재고자산(미완성 공사의 원가('16년 3,421백만원, '17년 5,251백만원)에 포함하고, '17년에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비용에서 자본화('17년 2,322 백만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재고자산마성 공사) 원가의 적정성 및 차입원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③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 ('17년 68,471백만원) - 회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 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한도 68,471백만원, 실행금액 40,029백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였음	제외) ·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일호주택(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정(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하고고이하게 사회 가지이버버

(감리집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회계법인 새시대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새시대 :
결산기 : 2016.12.31. 2017.12.31.	①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년 자기자본 과대계상 4,957백만원, 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2,693백만원, '17년 당기순이익	- 당해회사 등 3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각 30%
비상장법인	과소계상 4,957백만원)	- 당해회사 등 3개사에 대한
업종: 전문직별 공사업	- 회사가 진행기준에 의거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계상하면서, 계약수익 또는 계약원가에 대한 적용오류와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미계상 및	감사업무제한 각 2년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공인회계사 : 1인
	표시하는 오류로 인하여 각 연도별로 공시수익과 공사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진행 기준에 의한 공사수익 인식명세서의 적정성과	- 당해회사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각 2년
	공사손실충당부채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②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 제한규정 위반	- 직무연수 20시간
	- 회사 등 3개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이상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舊외감법(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	

(감리집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